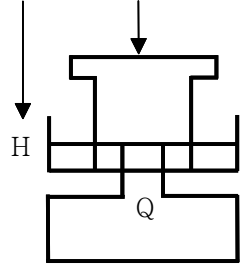


[별표 3]

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(제12조제4호마목 관련)

구 분	시 설 기 준	비 고
1. 유출방지턱	가. 저장시설의 최대용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유류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나. 유출방지턱의 높이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 $H \times (A - a) > 0.5 \times Q$ ·H: 유출방지턱의 높이 ·A: 방지턱 내의 바닥면적 ·a: 방지턱 내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바닥면적 ·Q: 저장시설의 최대저장용량 다. 방지턱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	방지턱 건축물 
2. 바닥 처리	가. 바닥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 나. 바닥에는 모래 또는 자갈 등 흡수성이 강한 재료를 10센티미터 이상 깔아야 한다.	
3. 기 타	가.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. 나. 유류공급 또는 주유 등을 방지턱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	